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군 보**

**정기 제467호 2021. 8. 2(월)**

## 조 레

장수군 조례 제 2520호	1
장수군 조례 제 2521호	8
장수군 조례 제 2522호	11
장수군 조례 제 2523호	13
장수군 조례 제 2524호	16
장수군 조례 제 2525호	19
장수군 조례 제 2526호	27

##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 2021-819호	30
장수군 공고 제 2021-821호	38
장수군 공고 제 2021-836호	45

##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21-60호	58
장수군 고시 제 2021-64호	59
장수군 농업정책과 고시 제 2021-4호	60

## 공 고

장수군공고 제 2021-833호	62
장수군시설관리사업소공고 제 2021-22호	64

회 람							
--------	--	--	--	--	--	--	--

장수군 조례 제2520호

##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수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장수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장수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장수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 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시설물 등에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장수군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 보급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장수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수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심의사항은 영 제56조제3항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장수군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장수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장수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 1. 개정이유

- 2021. 6. 9.에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관련 상위법령 개정안에 근거하여 조례 조문 간소화
  - 종전 총 32조문 → 총 14조문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장수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신설 (안 제3조)
  - ※ 사물주소(신설)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특정하는 주소
- 주소정보안내도 등에 게재하는 광고비용부담 신설 (안 제4조)

장수군 조례 제2521호

##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1년 8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91조”로, “동법시행령 제35조”를 “동법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 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규정 변경
- 상위법령에 따라 위촉위원의 임기변경 (안 제3조)
  -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위촉위원 임기변경

장수군 조례 제2522호

##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의신청 기간(7일 이내)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과 달라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

장수군 조례 제2523호

## 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하며, 교육 내

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  
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  
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장수군 조례 제2524호

##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숙박시설”이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 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2회”를 각각 “1회”로 한다.

제8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행 관계자(기사, 안내원)

### 5.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1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라북도의 관광패스라인 구축 및 토탈 관광 연계사업

4.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경우로 등록 관광사업체의 피해  
가 심각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장수군 관광객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 지원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숙박시설에 대한 규정 추가 (안 제2조)
  - 청소년 수련원, 자연휴양림 시설 추가
-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범위 완화 (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 추가 (안 제8조)
-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안 제10조)
  - 전라북도의 관광 패스라인 구축 및 토탈 관광 연계사업
  -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경우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수군 조례 제2525호

##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토지 건물의”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로, “소유?점유”를 “소유 · 점유”로, “토지 건물의”를 “토지나 건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을 “필요한 조치를 1개 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 ·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3.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 · 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06:00~16:00”을 “06:00~15:00”으로, “환경미화원 근무형태”를 “근무형태”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대상자가 이미 수수료를 감면받았거나 받는 중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2], [별표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제6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멀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li> <li>- 별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li> <li>-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li> </ul>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서 묶은 후 배출</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li> </ul>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 제거 후 배출</li> </ul>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묶은 후 배출</li> </ul>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 철판,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li> <li>-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li> </ul> <p>※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p>
2. 병 류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li> </ul> <p>※ 소주병, 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 가능</p> <p>※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p>
	○ 농약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li> </ul>
3. 캔 류	○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 · 식용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 후 배출</li> <li>-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ul>
	○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ul>
	○ 고철류 (공구, 철사, 못, 철판, 양은스텐류, 낫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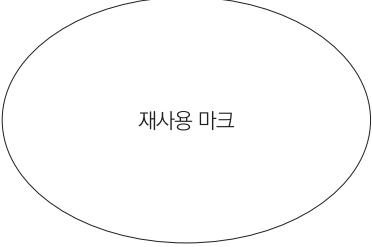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input type="radio"/> 무색 PET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입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li> </ul>
4. 플라스틱류	<input type="radio"/> PET병 (무색 PET 병 외) <input type="radio"/> 합성수지용기류 <input type="radio"/>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li> <li>※ 폐유용기류는 제외</li> <li>※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li> </ul>
5. 스티로폼	<input type="radio"/> 스티로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밸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기급적 구입처로 반납</li> <li>※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밸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밸포합성수지포장재</li> <li>※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밸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li> </ul>
6. 비닐류	<input type="radio"/>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li> <li>※ 비닐 장판 제외</li> </ul>

[별표 4]

###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제16조제1항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장 수 군 문 장	장 수 군 문 장
<b>종량제봉투( ℥ )</b> - 일 반 용 -	<b>종량제봉투( ℥ )</b>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등 공공목적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수	장수군수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장 수 군 문 장	장 수 군 문 장
<b>매립용 종량제봉투( ℥ )</b> <b>(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b> <b>- 일 반 용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립용 쓰레기(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만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세요.</li> <li>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 주세요.</li> <li>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ul>	<b>매립용 종량제봉투( ℥ )</b> <b>(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b> <b>- 공 공 용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립용 쓰레기(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만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세요.</li> <li>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등 공공목적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ul>
장수군수	장수군수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장 수 군 문 장	장 수 군 문 장
<b>음식물류 종량제봉투( ℥ )</b>	<b>재사용 종량제봉투( ℥ )</b>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li><li>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li><li>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ol>	 재사용 마크
장수군수	장수군수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〇〇〇〇)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 (전화 : 350-〇〇〇〇)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발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 2. 주요내용

- 청결유지 책임제에 대한 조항 개정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근무자에 관한
-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 신설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장수군 조례 제2526호

##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전문가와「농업인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를 “전문가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항”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교부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를 “교부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2020년 법제처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장수군 농산물 가공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탁 주체 선정 시 위탁 지정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조항 삭제 및 기타 용어 정리를 위함.

## 2. 주요내용

- 제14조 제4항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한다.”로 개정

장수군 공고 제2021-819호

##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장 수 군 수

1. 조례명 :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취지 : 장수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의 운영(안 제3조)
  - 군정소식 및 홍보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 규정

-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행(안 제4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규정
  - 유지관리 대행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소셜미디어 행사 운영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활동, 위촉과 해촉 등의 규정(안 제7조)

####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홍보팀  
(전화 063-350-2066, fax 063-350-5702 )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fax·직접방문 등의 어느 방법이든 가능.

####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홍보팀 (전화 063-350-20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장수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군민을 포함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 · 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의 민원을 말한다.
7. “참여행사”란 군민은 물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홍보, 군민 상호 간 소통, 정책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하는 각종 공모전, 군민과 이용자의 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해 이용

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문화, 특산품,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통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 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대행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참여행사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과 이용자의 군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이하 “기자단”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성별 비율을 고려해 위촉한다.

- ② 기자단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모집공고와 함께 공지한다.
- 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기자단은 군정 및 주요 시책 홍보, 축제 홍보,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하고, 군정 제안 등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⑤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자단의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취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③ 군수는 기자단 업무와 관련된 회의와 발대식,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주민·단체 및 공무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장수군 공고 제2021-821호

##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장 수 군 수

### 1. 재입법예고 이유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의 담당부서가 현 조직체계와 불일치하여 이를 수정하는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제12조의 2 3항의 항목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당연직에 주민 자치위원장 선임 및 위촉직의 성별 고려 위촉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분과위원회) 2항의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의 담당부서를 현 조직체계에 맞게 수정.
  - 1) 변경
    - “건설경제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

-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변경
  - “문화체육관광사업소”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변경
- 2) 추가
- “일자리경제과”를 일반행정분야에 추가
  - “시설관리사업소”를 사회문화분야에 추가
  - “농축산유통과”를 산림농업분야에 추가
  - “농촌지원과”를 산림농업분야에 추가
  - “과수과”를 산림농업분야에 추가
  - “농축산유통과”를 산림농업분야에 추가
- 3) 삭제
- “농업기술센터”를 산림농업분야에서 삭제
  - “환경자원사업소”를 환경건설분야에서 삭제

- 나. 제12조의 2(읍면 위원회 구성) 3항 수정
- 1) 위원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 2) 당연직 위원에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선임
  - 3)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고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2)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0. ~ 2021. 8. 9.(20일간)

다. 조례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기획 조정실장)
- 2) 팩스 : 063) 350-5702(발송 후 전화 확인, 확인 전화 063) 350-2047)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입법예고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의 참고 사항

##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 2(읍면 위원회 구성)

③ 읍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2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17조 관련)

구 분	담당부서	간 사
일반행정분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산림농업분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사회문화분야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
환경건설분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 신·구조문대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 2(읍면 위원회 구성)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생 략)</li> <li>③ 읍면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읍면 장이 위촉한다.</li> </ul> <p>[별표]</p> <p>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1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구 분</th><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담당부서</th><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간 사</th></tr> </thead> <tbody> <tr> <td>일반 행정분야</td><td>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td><td>기획조정실 기획팀장</td></tr> <tr> <td>산림 농업분야</td><td>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td><td>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td></tr> <tr> <td>사회 문화분야</td><td>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 관광사업소</td><td>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td></tr> <tr> <td>환경 건설분야</td><td>환경위생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환경자원사업소</td><td>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td></tr> </tbody> </table>	구 분	담당부서	간 사	일반 행정분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산림 농업분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사회 문화분야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 관광사업소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	환경 건설분야	환경위생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p>제12조의 2(읍면 위원회 구성)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생 략)</li> <li>③ 읍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신망이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li> </ul> <p>\</p> <p>[별표]</p> <p>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1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구 분</th><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담당부서</th><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간 사</th></tr> </thead> <tbody> <tr> <td>일반 행정분야</td><td>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td><td>기획조정실 기획팀장</td></tr> <tr> <td>산림 농업분야</td><td>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산림과</td><td>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td></tr> <tr> <td>사회 문화분야</td><td>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td><td>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td></tr> <tr> <td>환경 건설분야</td><td>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td><td>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td></tr> </tbody> </table>	구 분	담당부서	간 사	일반 행정분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산림 농업분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사회 문화분야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	환경 건설분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구 분	담당부서	간 사																													
일반 행정분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산림 농업분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사회 문화분야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 관광사업소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																													
환경 건설분야	환경위생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구 분	담당부서	간 사																													
일반 행정분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산림 농업분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사회 문화분야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																													
환경 건설분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별지 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공고 제2021- 836호

##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조례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일괄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가능조항 정비(안 제20조의 2)

- 지역특산품 등 공동 생산·전시 및 판매조항 정비

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사항 신설(안 제32조)

- 지자체 귀책사유 발생 시 해당기간에 대해 100퍼센트 감경 신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7항, 제35조 제2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감액율 조정(안 제34조)

- 전년도의 사용료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감액 조정 감액율 변경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6조, 제34조

라.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기한, 분할납부, 유예규정 정비(안 제35조)

-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사용전 미리납부 규정 정비

- 100만원 초과 대부료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납부유예 규정 삭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정비(안 제40조 제5호)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하는 사업의 고용규모 축소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재무과 (전화 : 063-350-2246, FAX : 063-350-571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063-350-2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을 “장수군”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영 제7조의2”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를 “영 제3조”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행정 · 일반재산의 수의 계약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군 지역”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으로 생산 ·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를 “생산 · 전시 및 판매하고자”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8조제4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장수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를 감경 할 수 있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를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로, “감액율”을 “감액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9월 이내 4회 분납”을 “연 6회 분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영 제14조 제6항 및 영 제3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하며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한다.

제40조제5호다목 중 “100명 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관리사무의 위임)</b>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b>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b>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영제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⑦ (생략)</p> <p><b>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b>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li> <li>3. ~ 6. (생략)</li> <li>7. (생략)</li> </ul> <p><b>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b> ① 영 제13조 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군 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li> </ul>	<p><b>제1조(목적)</b> ----- 장수군-----  -----  -----  -----.</p> <p><b>제3조(관리사무의 위임)</b>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p> <p><b>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b>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  -----.  ② ~ ⑦ (현행과 같음)</p> <p><b>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b> ①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조-----  -----  -----.  3.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p> <p><b>제20조의2(행정 ·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b>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역-----</p>

현 행	개 정 안
<p>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우리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거나 또는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p> <p><b>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b>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 략)</p> <p><b>제28조(대부료의 요율)</b> ① ~ ③ (생 략)</p> <p>④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⑤ · ⑥ (생 략)</p> <p><b>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 ① (생 략)</p> <p>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  3. ~ 5. (생 략)  〈신 설〉</p>	<p>② -----  -----  -----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  자 -----  -----.</p> <p><b>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b>  -----  -----  -----  -----.</p> <p>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4. ~ 6. (현행과 같음)</p> <p><b>제28조(대부료의 요율)</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b>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  -----.</p> <p>1. · 2.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⑥ 장수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하거나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 ----- - 감액률----- 1. ----- ----- 100분의 70 2. ----- ----- ----- 100분의 60 3. ----- 100분의 50
1. 지목상 전, 담을 경작용으로 사용 · 대부하는 경우 : <u>100분의 50</u> 2. 생산 ·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로 사용 · 대부한 경우 : <u>100분의 45</u> 3. 그 밖의 경우 : <u>100분의 40</u>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영 제14조 제6항 및 영 제3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하며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한다. ② ----- ----- 1. ----- 연 6회 분납 〈삭 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5.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가. · 나. (생 략)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u>100명</u> 이상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 6. ~ 9. (생 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30명 이상----- ----- 6. ~ 9. (현행과 같음)

불임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 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 ·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전 라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공포 알림

1. 회계제도과-1594(2021.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 확대 및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4.20.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법률은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을 통해 '22.4.21. 시행될 예정이오니
3. 각 시·군에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조례개정 등 필요 조치사항 준비를 통해 신설·변경되는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법률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주요 개정사항(요약)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사본) 1부. 끝.

전 라 북 도 자 사



수신자 전주시장(회계과장), 군산시장(회계과장), 익산시장(회계과장)·정읍시장(회계과장), 남원시장(재정과장), 김제시장(회계과장), 원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재무과장), 풍천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이현준 재산관리팀장 이정탁 회계과장 전경 2021. 4. 23.  
이주철

협조자

시행 회계과-9634 (2021. 4. 23.) 접수 재무과-11230 (2021. 4. 23.)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2341 팩스번호 063-280-2369 / [hjzzang2002@korea.kr](mailto:hjzzang2002@korea.kr) / 대국민 공개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23.5.12-20.), [www.apmg2023.kr](http://www.apmg2023.kr)

문서관리카드 재무과-11230 1/1

장수군 고시 제2021-60호

##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지를 재배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치 :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산63번지
- 면적 : 25,530m<sup>2</sup>

3. 사업비 : 금135,905,000원

4. 사업기간 : 2019. 01.~ 2021. 06.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유 중 근

장수군 고시 제2021-64호

##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지를 재배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산61-1번지 외 1필지
- 면적 : 2,686m<sup>2</sup>

3. 사업비 : 금17,690,000원

4. 사업기간 : 2018. 03.~ 2021. 08.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유연호

장수군 농업정책과 고시 제2021 - 4호

##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장 수 군 수

1. 사업명칭 :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 중심지인 천천면 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 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3. 사업위치 : 장수군 천천면 일원

4. 사업비 : 5,930백만원(국비 4,151 도비 890 군비 889)

5.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6.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행복나눔터, 하늘내체육공원, 장항문화회관, 하늘내정  
류소

- 지역경관개선 : 하늘내 둘레길, 간판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7. 사업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8.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수군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063-350-238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공고 제2021-833호

##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3일

장수군수

○ 지정일자 : 2021년 07월 23일

○ 지정내역

위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계	471.00m	3.00m	1,640.00㎡		
장수읍 대성리 산257-1	67.00m	3.00m	420.00㎡	정상두	동의
장수읍 대성리 1306-7	79.00m	3.00m	450.00㎡	정상두	동의
산서면 오성리 산103-4	39.00m	3.00m	78.00㎡	정상두	동의
장수읍 대성리 207-32	196.00m	3.00m	509.00㎡	정상두	동의
장수읍 대성리 207-22	36.00m	3.00m	23.00㎡	정상두	동의
장수읍 대성리 산 255-10	54.00m	3.00m	160.00㎡	정상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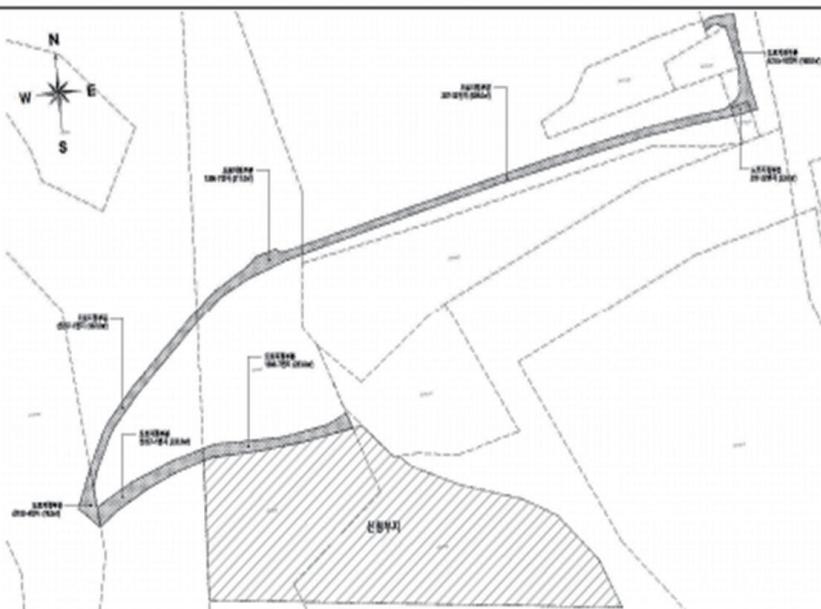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협회도

축 척 [ ] 1/600, [ ] 1/1,200

##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1-22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장수군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구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2021. 7. 28.

**장 수 군 수****1.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내역**

시설명	위 치	배수구역(마을)	처리공법	설계유입량 (m <sup>3</sup> /일)	사용개시일	관로
장수 공공	장수읍 선창리 935	장수, 송천, 이교	산화구법	2,000	03년 06월	분류식
산서 공공	산서면 사상리 853	평촌, 신월	선회와류식 SBR	800	15년 12월	분류식
번암 공공	번암면 대론리 1304	광대, 월지지, 상동, 하동, 원노단, 하노단, 시동강, 신기, 두동, 건천, 신원, 원대론, 수척, 유정	선회와류식 SBR	500	15년 12월	분류식
하평 소규모	장수읍 송천리 2118-1	상평, 하평, 와동, 개정, 용계	BBF-DNS공법	80	15년 05월	분류식
구락 소규모	장수읍 송천리 2056-1	구락	RC막 분리	60	01년 03월	분류식
안양 소규모	장수읍 용계리 795-3	안양	고효율 오수합병	50	97년 12월	분류식
덕산 소규모	장수읍 덕산리 810-17	덕산	고효율 오수합병	25	01년 12월	분류식
금천 소규모	번암면국포리 1138-1 (금천,원북)	금천, 원북	바이오메트	40	03년 01월	분류식
원명덕 소규모	장계면 명덕리 1317	원명덕	분뇨고농도유기	40	02년 09월	분류식
장척 소규모	천천면 장판리 384-7	장척	흡수성바이오플터	38	01년 10월	분류식

박곡 소규모	천천면 월곡리 564-5	박곡	흡수성바이오플터	45	02년 12월	분류식
고정 소규모	계남면 화음리 726-4	고정	호기성처리	35	01년 08월	분류식
농소 소규모	계북면 매계리 323 (농소,연동)	농소, 연동	분뇨고농도유기	60	01년 10월	분류식
문성 소규모	계북면 어전리 297-1	문성	분뇨고농도유기	40	01년 10월	분류식
양악 소규모	계북면 용소막길 28-14	양악, 당저	분뇨 및 고농도	70	03년 11월	분류식
외림 소규모	계북면 원촌리 2210	외림	GBM정화법	35	02년 12월	분류식
주촌 소규모	장계면 대곡리 704-1	주촌	현수다단계	70	03년 09월	분류식
수분.송계 소규모	장수읍 수분리 1092	수분, 송계	CF-SBR	70	10년 12월	분류식
어전 소규모	계북면 매계리 717	월현, 매계, 어전	BBF-DNS공법	120	12년 10월	분류식

##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유입 수질

시설명	설계유입수질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수
장수 공공	128.0	110.0	126.0	22.7	3.2	
산서 공공	175.0	141.0	206.0	33.4	4.8	
변암 공공	175.0	141.0	206.0	33.3	4.8	
하평 소규모	175.0	143.0	192.0	29.3	4.1	
구락 소규모	111.8	78.0	67.5	57.3	3.8	
안양 소규모	57.2	200.0	61.5	20.2	6.5	
덕산 소규모	120.0	70.0	100.0	26.2	4.0	
금천 소규모	110.0	60.0	100.0	27.0	4.0	
원명덕 소규모	100.0	60.0	100.0	26.0	4.0	
장척 소규모	92.6	51.6	40.7	30.1	1.8	
박곡 소규모	100.0	70.0	100.0	30.0	10.0	
고정 소규모	93.0	52.0	41.0	30.0	11.0	
농소 소규모	123.9	78.0	67.5	57.3	3.8	
문성 소규모	123.9	78.0	67.5	57.3	3.8	
양악 소규모	110.0	100.0	150.0	25.0	3.0	
외림 소규모	120.0	70.0	165.0	29.3	4.7	
주촌 소규모	110.0	60.0	100.0	65.0	10.0	
수분.송계 소규모	190.0	140.0	180.0	45.0	8.3	
어전 소규모	179.3	145.6	195.6	29.3	3.4	

**3.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장 소 :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팀

**4. 열람서류**

- 가. 하수처리 구역
- 나. 기타 관련 서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팀(063 350 290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